

# PP 변경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안내

## 1. 변경등록 (방송법 제15조제1항)

### ○ 항목별 구비서류

변경등록 항목	구비서류	신청서식
당해 법인의 합병	1. 이사회 의사록 (합병 계획 포함) - 당사자 모두 2. 합병예정 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 (신청일 현재) 3. 채널운용계획서 (신규등록요령 참조) - 신청인에 관한 사항 (공통) ⇒ 반드시 새로 작성 - 신청 채널에 관한 사항 (채널별) - 방송발전 기여 계획 (공통) ⇒ 반드시 새로 작성 4. 합병 계약서 5. 합병전 주주명부 및 합병 후 예정 주주명부	「방송채널사용사업 (전광판방송) 변경 등록신청서」  (제22호 서식)
당해 법인의 분할	1. 이사회 의사록 (분할 계획 포함) 2. 분할예정 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 (신청일 현재) - 분할 후 PP 법인에 한 3. 채널별 운영계획서 (신규등록요령 참조) 4. 분할 계획서 5. 분할전 주주명부 및 분할 후 예정 주주명부	
방송분야의 변경	1. 채널 운영계획서 (신규등록요령 참조) 2. 기업진단보고서 (신청일 현재)	

○ 신청 시기 :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(사전 신청)

### ○ 위반시 처분사항

→ 행정처분 : 등록취소,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 
(방송법 제18조, 제19조)

→ 형사고발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
(방송법 제106조)

## 2. 대표자 등 변경신고 (방송법 제15조제3항)

### ○ 항목별 구비서류

변경신고 항목	구비서류	신고서식
대표자	1. 이사회 의사록 2. 이력서 3. 가족관계등록부	「( )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」  (제26호 서식)  ※ 필요시 서식수정 가능
편성책임자	1. 임명 공문서 2. 이력서 3. 가족관계등록부	
법인명	1. 이사회 의사록	
주된 사무소 주소	1. 이사회 의사록 2. 건물 임대차 계약서	
송출시설	1. 송출 위탁 계약서	

### ○ 신청 시기 : 지체없이

### ○ 위반시 처분사항

→ 행정처분 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방송법 제108조)

## 3.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신고 (방송법 제15조의2제1항)

### ○ 항목별 구비서류

변경신고 항목	구비서류	신고서식
최다액출자자	1. 주식매매 계약서 2. 이사회 의사록 (증자계획 포함) - 필요시 3. 주식매매 전·후 주주명부 등	「최다액출자자 변경 (승인, 신고)등 신청서」  (제27호 서식)
실질적 경영권 지배	1. 주식매매 또는 의결권위탁 관련 계약서 2. 주식매매 또는 의결권위탁 전·후 주주명부 등	

### ○ 신고 시기 :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 하고자 하는 경우 (사전 신청)

※ 주식매매 등 계약일로부터 30일(또는 60일)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,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신고 후 주식 또는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함

### ○ 위반시 처분사항

→ 행정처분 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방송법 제108조)

#### 4. 등록취소 요건 (방송법 제18조)
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·변경등록을 한 때
- 방송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
- 방송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
- 방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
-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
-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
#### 5. 휴폐업 신고 (방송법 제84조)

-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
  - 천재·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음
- 위반시 처분사항
  - 행정처분 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방송법 제108조)

#### 6. 각종 신청 서식 : 붙임







